

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임 현 의원 외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9년 4월 15일
- 회부일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라 복지지원 사업 신청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 범위를 확대하고,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도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가. 복지지원 신청대상을 독립유공자에서 국가유공자까지 범위확대 (안 제7조)
- 나.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정비

## 5. 검토의견

###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『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』 개정에 따라 그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만 허용되었던 복지지원 사업 신청 대상을 “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”에게도 확대하였고,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『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위한 정비기준』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**붙임 :** 충청북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